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1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1.

발 의 자:이주환·김기현·박덕흠

양금희 • 이철규 • 임이자

전봉민 · 정동만 · 이달곤

황보승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그 각각의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있지 않음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5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1항제13호의2를 제13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의2. 제26조제5항(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확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54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
부과한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3의2. 제26조제5항(제39조의5
	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
	<u>다)에 따른 확인을 거부·방해</u>
	또는 기피한 자
<u>13의2.</u> (생 략)	<u>13의3.</u> (현행 제13호의2와 같
	승)
14. ~ 17. (생 략)	14. ~ 1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